

윤리교육

행정처분 관련 의료법 실무

법무법인 세승

현 두 룬

목차

1. 행정처분의 유형
2.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3.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
4. 행정처분 절차
5. 대표적 사례

1. 행정처분의 유형

1. 행정처분의 유형

- ◆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의 행정처분
 -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 부담이득금 환수
 - 업무정지/과징금
 - 법 위반 사실 공표
- ◆ 기타 법률상의 행정처분
 - 마약류 관리법상의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과징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지정취소

2

2.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 2-1. 면허 정지
- 2-2. 면허 취소
- 2-3.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2-1. 면허 정지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단서, 검사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부정·무정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식재 <2011.8.4>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4

* 면허정지 처분 사유

◆ **중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와 한 때(의료법 시행령 제2조)**

1. 허위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명령: 1할
2. 비도덕적 진료명령: 1할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자격정지에서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용암회의 의사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문선승 2011.4.28]
4. 과잉진료 및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경과/자격정지 1할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공물을 수수하는 행위: 2할
6. 다른 의료기관 이용하려는 환자를 자기 의료기관에 유인: 2할
7. 약국과의 담합 행위: 업무정지 2할

◆ **의료기관 불법 개설, 고용 등: 자격정지 3할**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 개설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한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의료기관 중복개설

5

* 면허정지처분 사유

◆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 진료기록부 관련**

-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 처방전 발행: 자격정지 2할
- 거짓으로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 발급: 자격정지 3할
-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 자격정지 1할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자격정지 1할
- * 2012. 4. 부터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 진료기록부 미작성, 미보관: 자격정지 1할
-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 자격정지 15할
- 진료기록부에 서명 누락: 경고

◆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자격정지 3할 (업무정지 3개월 병과)**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자격정지 15할**

6

* 면허정지처분 사유

◆ **진료비 허위 청구**

▶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2004. 3. 이후)** ◀ (단위: 월)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 청구 비율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	-	1	2	3	4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	-	1	2	3	4	5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	2	3	4	5	6	
4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	3	4	5	6	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	4	5	6	7	8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5	6	7	8	9	
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	6	7	8	9	10	

7

* 불법 리베이트 수수한 경우

※ **의료법**
 • **제23조의2(무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제형, 성분, 용도, 용량, 투여 방법, 용기, 포장, 표시, 설명서, 삽입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건분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감면 가능(2/3 범위 내)

•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위촉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8

* 의료법 시행규칙

•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23조의2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신선 2010. 12. 1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제공	견본품 또는 sample를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 수량의 의약품·의료기기
2. 학술대회지원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회비
3. 임상시험지원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연구비
4. 제품설명회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설비의 교환비, 숙박, 요양기관 직입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
6.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요양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제시,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 1개월: 거래금액의 1.0%, 2개월: 1.2%, 3개월: 0.5% 이하
6. 시판 후 조사	신약형 승인받은 시판 후 조사는 총매당 5만원 이하(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사례비
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자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


9

***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2011. 6. 20. 이전 : 자격정지 2월(중위상상행위)

2. 2011. 6. 20. - 2013. 3. 31. : 벌금액에 따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벌금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벌금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자격정지 2개월

10 

3. 2013. 4. 1. 이후 행정처분 기준 [부표 외 <신설>]

2013.3.29*

위반자수	수금액	행정처분기준
1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2차	300만원 미만	경고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차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4차 이상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2-2. 면허 취소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삭제 (2009.12.31)
- 5. 면허종료를 필러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거나, 개선(改善)의 결이 인정되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85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 1. 「질서보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결손실업자; 다만, 정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미약(未弱) 상태(失業者)인 자
- 3. 금지사자(禁治人)인 자
- 4. 이 법 또는 「합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보건법」(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었거나 징역을 받지 아니하고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12 

*** 면허취소 사유**

- ◆ 면허 취소 사유
 - 의료법 및 기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필요적 면허 취소)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종 대어 : 2년
 - 결격 사유 발생
- ◆ 재교부금지기간
 -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받은 경우 : 2년
 - 면허종 대어 : 2년
 -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벌 확정 : 3년

13 

2-3. 업무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업을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6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53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의 비준법령인, 준법기부금 지급의뢰권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 취소되거나 비준한 때
5. 제33조 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6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부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양세 처분처분의 배에 따라 징수한다.

14 

*** 업무정지처분**

- ◆ 처분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관할 보건소)
- ◆ 대표적인 처분 사유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3월
 -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조사 거부, 시정명령 위반 : 15일
 - 의료광고 규정 위반 ; 허위광고(2달), 과장광고(1달), 의료법상 금지 광고(1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15일, 3차 위반 : 1달)
 - 약사와의 담합행위(1차 위반 : 1월, 2차 위반 : 3월, 3차 위반 : 허가 취소)
 - 사기(면허에 허위 청구로 유죄 판결 받은 경우)
- ◆ 과징금 대체 가능
 - 업무정지처분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대체는 3회까지만 가능 (선료에 허위 청구는 대체 불가)
 - 업무정지 1달 = 30일
 -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총수입금액 : 처분 전년도 의료소득으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의미

15 

3.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

- 3-1. 본인부담금 환불 처분
- 3-2.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 3-3. 업무정지/과징금처분
- 3-4. 법 위반 사실 공표

3-1.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등)
 - ㉠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 ㉢ 제2항 후단에 따라 중복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3-2.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 공단은 속일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금에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일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전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약국

- * 속일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부당징수)의 유형
 1. 요양급여기준 위반 청구
 2. 의료관계 법규 위반
 - 환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한 경우
 -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 행위
 - 방사선사 이외의 자가 방사선 촬영을 보조한 경우
 -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닌데도 낙태수술을 하고 원외처방전 발행한 경우
 -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3. 허위 청구

3-3. 업무정지/과징금처분

- 제97조(보고의 경시)
 -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답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8조(업무정지)
 -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일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무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99조(과징금)
 -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완화하여 속일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3-4. 법 위반 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리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 건강보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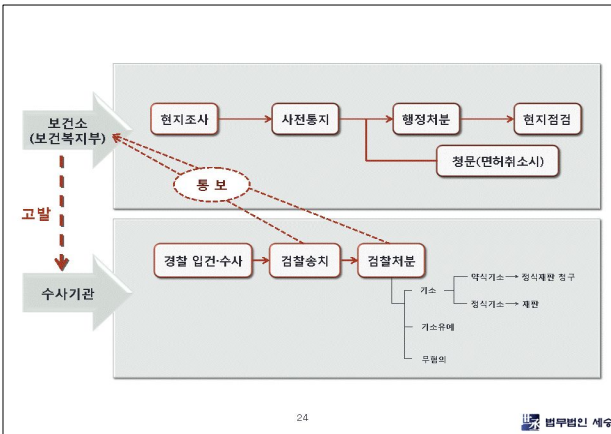
구분	관련조항	내용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 1년 범위 내에서 월평균부담금액과 부담비용에 의하여 처분기간을 산출 •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과징금 적용지침」 •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이면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은 3배, 30일 초과 50일은 4배, 50일 초과 100일 5배의 과징금 부과
건강보험법	벌금	• 자료미제출 현지조사 거부, 방해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별도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1천만원 이하 벌금
	명단공표	• 공표대상: 허위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허위 청구 비율 20% 이상 • 공표내용: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의료법	과징금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6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당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
	면허지각정지 및 업무정지	•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지각정지처분과 동시에 기간 동안 의료업도 할 수 없다
형법	형사고발	• 허위청구금액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 10%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
	형사처분	• 현지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요양급여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임

* 진료비 허위 청구에 대한 처분

- 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 의사면허 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구체적인 기준은 질병군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결정
-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제65조 제1항)
 -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때 - 필요적 취소
 - 재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의료기관 업무정지 배제
 - 면허정지시 정지기간 중 의료기관의 업무도 정지(제66조 제3항)
 - 집행유예 이상 형 선고시 : 의료기관 폐쇄 및 3년간 개설 금지(제64조 제2항)
- 명단 공표
 - 환허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
- 사기죄로 형사 고발

22 

4. 행정처분 절차



5. 대표적인 위반 사례

5-1. 환자 유인
5-2. 불법 개설 등


5-1. 환자 유인

의료법 제27조(우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지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위반 시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자격정지 2월

- 위반행위 유형
 -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 금품 등 제공
 -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 제공
 - 기타 유인 행위


26 

* 비급여대상 진료비 할인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억울 스킨케어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 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환자 유인행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08. 2.28. 선고2007도10542 사건)

*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급여비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

27 

*** 겸진 비용 할인 사례**

피고인(병원 행정부장)이 병원의 승인을 받고 "농원에서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한 금액인 20만 원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사례. (우지)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 ○○병원의 행정부장인 피고인 1은 병원장인 피고인 2의 허락을 받고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의료기관 ○○병원으로부터 따로 금품을 제공받은 점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의료기관의 승인 하에 행정부장의 직적으로 행해진 피고인 1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곧 의료기관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를 유치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한자의 '소개·알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기관 ○○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구제적 행위자인 피고인 1에게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예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같은 항의 한자의 '유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메일 발송 사례**

1. 공소사실의 요약

"만국의원 원장인 피고인 **과 피고인 주석회사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 공모하여 2008. 3.경 주석회사 **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닷컴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와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 원 체질단 모자이라는 제목으로 "유모인 제도"라는 유망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의 할인 90만 원 OK, 유모인식 부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광고로 이메일로 2회 발송하여 그 유모인장자 중 20명에 위 이벤트 광고내용대로 90만 원에 라식·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다.

2. 판결요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판결)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조항의 일범위와 관련 법에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역·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 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행위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행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시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타 유인행위**

◆ 대법원 2005. 4.15. 선고 2003도2780

[1]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의 적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의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2. 의료기관 불법 개설, 고용 등

◆ 불법개설에 관여한 의사의 책임과 불이익

- 행사처분 및 3개월 면허정지처분
(자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2/3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 불법개설로 인한 진료비 청구는 건강보험법상의 '부당청구'에 해당
→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처분
- 기타 의료법 위반에 취약(무면허의료행위, 허위, 과대광고, 환자 유인 등)
→ 이로 인한 모든 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일단 개설자인 의사에게 귀속
- 무자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도 곤란
- 병원 의료장비, 시설 등에 대한 권리 행사도 곤란
- 직위유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도 개설자인 의사의 책임

5-2. 불법 개설 및 환자 유인 사례

◆ 사건의 내용

- 갑(의사), 을(사무장, 사단법인 대표), 병(투자자)은 병원개설계약 체결(갑 명의로 개설한 후, 나중에 사단법인 설립 후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자 변경하기로 합의)
- 갑 명의로 투석전문 의원 개설
- 을 : 사단법인 설립 후 보건소에 병원당수도계역서, 개설자 변경신청서 제출
-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자 변경
- 환자 유인(교통 편의 제공, 환자에게 아침 식사 무료 제공,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료 지급 등)
- 갑과 을 사이에 분쟁 발생, 을이 갑을 해고.
- 갑 : 을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
- 을 : 갑을 무고죄로 고소
- 보건소 : 환자 유인으로 고발(투석협회에서 보건소에 민원 제기)
- 검찰 : 갑, 을, 병, 사단법인을 기소

*** 법원 판단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2. 10. 5.자 판결**

1. 갑(의사) : 무고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 의료법 위반 : 비의료인(갑)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점.
2. 을(사무장) : 의료법 위반(불법 개설 + 환자 유인)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법 개설 :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자 변경하기 이전
* 환자 유인 :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자 변경 이후
1) 송합차 이용하여 투석환자 13명에게 교통편의 제공
2) 투석환자 18명에게 주 3회 아침 무료 식사 제공
3) 브로커 5명에게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1,700만원 제공
3. 병(투자자) : 의료법 위반(불법 개설)으로 벌금 500만원
* 의료법 위반 : 을과 동업하여 갑을 고용하고 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점
4. 사단법인 : 의료법 위반(환자 유인)으로 벌금 700만원(양벌 규정)